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

제출일자: 1998. 4. 7.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사유

현행의 지방세 조례를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 법령과 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 □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신설
 -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안 제6조) 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세무조사. 지방 세 벆칙사건 조사시 교부하여야 함.
 - 수정신고납부제도 신설 (안 제7조)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납부 가능
- □ 지방세 구성요소의 기본적 사항 반영
 - 과세대상 규정 신설 (안 제24조, 53조, 72조)
 -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안 제19조, 25조, 37조, 42조, 54조, 64조, 73조, 84조, 96조)
 -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신설 (안 제20조, 28조, 39조, 76조, 91 조, 93조, 99조)
 -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 신설 (안 제21조, 26조, 29조, 38조, 46조, 제47조, 55조, 56조, 65조, 74조, 75조, 90조, 92조, 97조, 98조)
- □ 납세의무자의 각종 신청 및 신고의무 규정 강화
 - 비과세 및 감면신청 규정 강화 (안 제30조, 43조, 44조, 101조)
 - 신고의무 규정 강화 (안 제31조, 33조, 34조, 48조, 57조, 58조, 59조, 60조, 71조, 80조, 87조, 88조, 94조, 100조)

■ 개정근거

○ 지방세일반조례 표준안 (경남도세정13400-888 '97.12.16)

거창군세조례 개정내용

개정조문	개 정 내 용	비고	
제1조 (목적)	□ 거창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 제5조	□ 내용 변경없이 자구일부 수정		
제6조 (납세자권 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 납세자권리보호 헌장실시 규정 신설 ○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고시 ○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제7조 (수정신고)	□ 수정신고 규정 신설○ 신고납부후 과세표준, 가액의 변경시등 수정 신고납부 가능○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		
제8조 ~ 제10조	□ 내용 변경없이 자구 일부수정		
제11조 (세무공무 원의 수납)	□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8조	□ 내용 변경없이 자구 일부수정		
제2장 제1절 (주민세) 제19조 ~ 제23조	□ 내용 변경없이 자구 일부수정 □ 납세의무자 ○ 균등할: 군내에 주소(사업소,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소득할: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과세기준일과 납기 ○ 과세기준일과 납기 ○ 라시기준일: 매년 8월 1일 ○ 납기: 8.16 ~ 8.31 □ 세율: 현행과 같음 □ 주민세 신고납부 규정: "개정안" 참조 □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규정 신설 ○ 수정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내 수정신고납부 ○ 추가납부 세액 및 환부세액: "개정안"참조		

개 정 조 문	개 정 내 용	비고
제2절 (재산세) 제24조 ~ 제36조	 □ 과세대상 : 군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 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 과세표준 :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 가표준액으로 함 □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대상 지역 명확화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제3절 (자동차세) 제37조 ~ 제41조	□ 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 납기 - 제1기분: 6.16 ~ 6.30 - 제2기분: 12.16 ~ 12.31 ○ 징수방법: "개정안"참조 □ 수시부과 세액계산 규정 신설 ○ 신규 또는 말소등록시 ○ 과세대상이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될 때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방법 규정 신설연간세액에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일수를 곱한 금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세액	
제4절 (농지세) 제42조 ~ 제52조	 납세의무자 : 농지소득이 있는 자 > 농지세의 과세기간 규정 신설 ○ 과세기간 : 1.1~12.31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 ○ 사망 또는 해외출국시는 사망일 또는 출국일 □ 농지세의 과세표준 규정 신설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감면소득과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세율 : "개정안'참조 □ 농지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규정 신설 ○ 확정신고 ;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증의 농지소득 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 	

개정조문	개 정 내 용	비고
	○ 신고납부 :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수시부 과,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제5절(담배소비세) 제53조 ~ 제63조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흡연용 제조담배, 씹는 제조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기타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 세율 : "개정안" 참조 □ 과세표준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 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함. □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 반출신고 □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의무 신설 □ 가산세규정 신설 ○ 개업 또는 폐업 미신고, 기장의무 불이행시 100분의 10 가산 ○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가산 □ 납세보전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음 	
제6절 (도축세) 제64조 ~ 제71조	□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함.	
제7절 (종합토지 세 제72조 ~ 제83조	 □ 과세대상 규정 신설: 모든 토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에 군수가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세율: "개정안"참조 □ 과세기준일 및 납기: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10.16~10.31가지를 납기로 함 □ 수시부과. 부과취소의 사유발생시 규칙제104조의17에 의한 세액조정을 하여야 함 	

개 정 조 문	개 정 내 용	비고
	□ 과세자료의 공람 및 이의신청규정 신설	
	○ 공람 :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신청 :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	
	○ 심의 및 결정 :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결정 및 통지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 등기등 관	
	계서류의 열람. 사본청구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규정 신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직접 사용. 수익자가 다	
제3장 목적세	를 경우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제1절 (도시계획	하여 신고하여야 함.	
세)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	
제84조 ~ 제95조	물의 가액으로 함.	
	□ 과세기준일과 납기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동일함	
	□ 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는 사업소세 납세의무	
제2절 (사업소세)	를 가짐.	
제96조 ~제101조	□ 과세표준	
	○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종업원할 : 월급여의 총액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세
- 2. 재산세
- 3. 자동차세
- 4. 농지세
- 5. 담배소비세
- 6. 도축세
- 7. 종합토지세
-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계획세
- 2. 사업소세
-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 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 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2 절 납세자권리보호

-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 과 징 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 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허가등의 제한) ①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 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 2. 허가등의 종목
 -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 4. 기타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 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결정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 제17조(서류의 송달 방법) ① 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 은 거창군이장정수조례 및 거창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법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교부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9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 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 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 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 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③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재 산 세

- 제24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다.
- 제29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 택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이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이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이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거창군세감면조례 (이하 "감면조례"라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 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 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되었을 때
 -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7조(납세의무자)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 버스	100,000원	_
대형전세버스	70,000원	_
소형전세버스	50,000원	_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 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 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부과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 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 4 절 농 지 세

- 제42조(납세의무자)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 ④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4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과세기간) ① 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출 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 제46조(과세표준) 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 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2이상의 시 또는 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
1,000만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 초과	108만원 + 1,000만원
2,500만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513만원 + 2,500만원
5,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1,463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제48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년 2회 시.군조례로 정하는 기 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51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 제52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등) ① 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 ④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담배소비세

- 제53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궐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 2. 씹는 제조담배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 제54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 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 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 제56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 ② 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3. 기타 참고사항
-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

-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소재지 주소
- 2. 대표자 및 관리자(재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 9. 기타 참고사항
-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61조(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62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 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63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 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절 도 축 세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 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 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7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 과징수한다.
 -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 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8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가산세) 군수는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1. 도살년월일
 -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 5. 기타 참고사항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절 종 합 토 지 세

제72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 제73조(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3. 공부상의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는 그 매수계약자
-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 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 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74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 ②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 3. 영 제194조의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 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 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 제4항에 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 ③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5조(세율) ①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다 게 표 판	게 끌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4만원 + 2천만원
5천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3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8만원 + 1억원
3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178만원 + 3억원
5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378만원 + 5억원
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1,128만원 + 10억원
3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128만원 + 30억원
5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50덕번 조과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 + 1억원
5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 + 5억원
1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 + 10억원
3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 + 30억원
5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 + 50억원
10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 + 100억원
30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 2,240만원 + 300억원
500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③ 제7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 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 2.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7조(구판사업용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78조(부과.징수등) ① 종합토지세는 제7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 16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9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 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80조(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제 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수있다.
 -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⑧ 법 제234조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1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2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에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3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자.

-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 3.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2. 재개발사업지구
 - 3. 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지구
-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한다

-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 때
 -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96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사업자"라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 제9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 제99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새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행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때
 -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5. 건출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10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적용시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소득할의 세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

제출일자: 1998. 4. 7.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사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중 감면대상 자동 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 화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감면 자동차의 용도 확대(안제2조제2항)
 - 당초 : 보철용
 - 개정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제2조제2항,제4조제1항)
 - 당초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circ 개정 : 배기량 $2{,}000{\rm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안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 개정근거

□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 (경남도 세정13400 ~ 177('98. 3. 16))

거창군세감면조례 개정내용

개 정 조 문	개 정 내 용	비고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 확대 ▷ 당초 : 보철용 ▷ 개정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 ▷ 당초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개정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증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 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에 별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 세를 감면함. 	
제3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 ▷ 당초: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 ▷ 개정: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서를 면제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였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 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 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4.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 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행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 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 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다.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차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 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u>4. 이륜자동차</u>
< 신 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응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된 자동차.

T

혅 했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 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 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 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 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 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 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신 설>

개 정 óŀ

감면) ① ----

자동차로서 해당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대하여는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된 자동차